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4월 25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1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4월 25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(2021. 11. 30. 공포 및 2022. 12. 1. 시행)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「건축물관리법」 개정(2022. 2. 3. 공포 및 2022. 8. 4. 시행)에 따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구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긴급점검 대상 용어 정비(안 제3조제3호)
- 2)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중 주변 여건상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정(안 제6조의2 신설)
- 3) 띄어쓰기 정비(안 제3조제1호 및 제6조제2호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#### 1) 개정 이유

-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의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#### 2) 주요 내용

가)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긴급점검 대상 용어 정비  
(안 제3조제3호)

- 상위법령 개정으로 「소방기본법」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를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함

나)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중 주변 여건상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정(안 제6조의2 신설)

-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대상을 신설 규정하여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

다) 띄어쓰기 정비(안 제3조제1호 및 제6조제2호)

#### 3)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중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개정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